

漁村契에 관한 연구 (經營共同体的 觀點에서)

A Study of the Eo Chon Gae

(In a point of Administrative Community)

姜 元 植
Won Sik Kang

Summary

The fishermen around fishing villages have organized the Eo Chon Gae, a co-operative organization based on the Fisheries Co-operative Law. The Eo chon Gae plays a vital role in the fishing village community, and the common economic, administrative and social profits are expected by members.

The members of the Eo Chon Gae must work together in a common coastal fishing ground, this fishing ground is jointly owned by the community, and the members have to conduct the Eo chon Gae jointly for their common profit.

This system, as mentioned above, is called the Eo Chon Gae, which is generally called a fishing village community, or a fishing administrative community. The purpose of these theses is to consider what kind of character and principles the Eo Chon Gae has.

The contents of these theses are divided into six parts:

1. The various concepts of the fishing administrative community
2. The progress of the Eo Chon Gae.
3. The organization of the Eo chon Gae.
4. The purpose of the Eo chon Gae.
5. The work of the Eo Chon Gae.
6. Types of the Eo Chon Gae.

目 次

- 一. 序 論
- 二. 漁業經營共同体的 概念
- 三. 漁村契의 誕生過程
- 四. 漁村契의 組織
- 五. 漁村契의 目的
- 六. 漁村契의 事業
- 七. 漁村契의 類型
- 八. 結 論

一. 序 論

漁村에는 共同體의 遺制가 남아있다. 卽 共同漁場을 中心으로한 組織이 그것이다. 이것은 地先漁民으로 하여금 모두가 共同作業으로 共同漁場을 管理하는 것이다. 이것은 漁民의 生産增強과 生活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自然部落을 基本地域單位로 하여 漁村契가 形成되고 있다. 이 漁村契員이 共同漁場에 經營參加權이 認定되고 이것은 法的(水協法) 뒷받침에 依해서도 保障되고 있을뿐 아니라 漁村契는 一般協同組合의 思想에 쫓아 契員의 經濟的 利益을 가져올 수 있는 所定の 共同事業을 行할 수 있다.

漁村契는 經濟的 弱者이며 小生産者인 漁民으로써 構成되어 서로가 協同精神에 立脚한 共同事業을 하는 實費經濟事業의 組織體인 것이다. 이러한 共同體의 組織은 漁民의 人的集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漁村契가 오늘날 共同體의 性格을 濃厚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漁場의 共同體의 所有에서 잘 나타나며 이것은 私的 所有인 農土와 對照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漁場이 共同體의 所有으로 殘存하고 있는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漁村契는 어떠한 共同體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가, 漁村契가 果然 經營共同體로서 앞으로도 存立할 수 있겠는가, 어떤 가에 對해서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이와 같은 着眼點에서 本 論文을 먼저 漁村契란 어떠한 經營共同體인가에 對해서 概念的으로 考察하기로 한 것이다.

二. 漁業經營共同體의 概念

漁業經營共同體는 經營共同體의 原理에 衍유되고 있다고 論者는 생각한다. 또한 이 經營共同體는 共同體에 依하여 形成되며 이것이 곧 經營共同體의 刻心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共同體와 經營共同體의 基礎理論을 그 出發點으로 하여 漁業經營共同體의 概念을 考察하고자 한다.

먼저 共同體란 本來 共同社會로서 理解하고 있다. 본래 共同體의 語彙와 定義에 있어서는 數多한 것으로 由來되고 있다. 共同體에 對한 用語는 獨逸語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 共同社會), 게마인데(Gemeinde : 共同體)로 쓰이고 있는데 前者는 特殊한 意味에서만 쓰이고 社會的 關係로서의 普遍的 意味에 있어서는 後者를 一般的으로 使用하고 있다.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라는 用語는 게젤샤프트(Gesellschaft : 利益社會)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使用되며, 이 兩者는 서로 對立하는 것이다. 게젤샤프트(Gesellschaft)는 共同生活(Öffentlichkeit)이며 세상(welt)이란 뜻이다.¹⁾

1) Gemeinschaft and Gesellschaft von Ferdinand Tönnies(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번시민 김대현 譯 p. 5

英語로서는 共同体를 커뮤니티(Community : 共同体)라 하는데 여기에는 게젤샤프트와 케인 데의 뜻을 모두 包含하고 있으며 狹少한 性格으로 把握되지 않고 結合度를 달리한 모든 團體에 對해서 널리 使用된다는 점이 獨逸語의 共同体와 英語의 共同体의 差異라 하겠다. 卽 커뮤니티(Community)는 一般社會學에서의 어소시에 손(Association)의 對置概念으로서의 理念을 指稱하는 用語로 使用되고 있다.²⁾

이러한 共同体에 對한 참된 뜻의 研究는 社會科學의 모든 部分에서 取扱되고 있다. 먼저 李丙壽 博士에 依한 共同体를 共同社會로 理解하고 있다. 즉 共同社會란 「衆多人의 意志의 完全統一체로서 持續的이고 有機的인 것이다」³⁾라고 定義하고 있다.

또한 崔虎鎭 博士는 元來 共同体란 血緣과 地線을 土台로한 共同組織(Gemeinwesen)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며 共同体가 原始的 性格을 지니면 지닐수록 血緣觀念은 강한 것이며, 個人은 共同体의 품안에 깊이 埋沒되고 만다고 한다.⁴⁾

따라서 土地(Grundeigentum)의 共同体의 占取의 主体는 共同体이며 共同体의 基本的 前提는 血緣共同体로 理解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自然的 個人에 依한 土地의 私有는 原則的으로 存在하지 않았고 各 部族은 山川을 境界로 하여 어떤 一定한 生産地域을 共同占取하고 生産活動의 舞臺로서 共同使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他部族으로 부터 侵害를 받을 境遇에는 部族全體가 共同防衛하였고 共同体의 個人이 族外者로 부터 被害되었을 경우에는 被害者가 屬하는 民族은 加害者가 屬하는 全民族에 對해서 피의 復讐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⁵⁾ 그리고 李英俠 教授는 共同体를 集團勞動과 集團의 所有에 依한 集團生産과 消費의 集團性에 照應한 社會組織 및 이데올로기(Ideology)에 있는 것이다.⁶⁾ 라고 하며 이것은 하나의 歷史的 形態로서 原始社會에 나타난 家族共同体가 이의 解体過程에서는 村落共同体(地域共同体, 農業共同体, 土地共同体, 隣保共同体)의 發生過程을 보게 된다. 村落共同体는 家族共同体의 擴大 및 分立에 依해서 形成된 것이다. 이 兩者는 私的 所有原則과 集團的 所有原則이라는 二元性에서 求할 수 있다. 村落共同体로서 케루族의 말카(Marca)共同体, 게르만(German)의 마르크(Mark)共同体, 印度의 村落共同体, 이집트(Egypt)의 노모스(Nomos)共同体 등이 있는데 이中 西歐에 있어서의 마르크(Mark) 共同体의 諸制度가 後期 社會 政治制度 등의 先驅가 되었고 이 마르크(Mark) 共同体는 게르만(German)民族 移動 時代에 있어 全 獨逸뿐 아니라 伊太利(Italy), 西瑞, 佛蘭西(France)北部 等地까지 波及되어 農業共同体로 發展되었다. 말카(Mark)라는 것은 血緣團體인 sippe(氏族)가 一定한 土地

2) 中央大論文集 第8集 1963. p. 112 引用

3) 李丙壽 著 國史와 指導理念 p. 48

4) 崔虎鎭 著 韓國經濟史 概論 p. 27

5) " 前揭書 " p. 27

6) 李英俠著 一般經濟史 要論 p. 72

에 定住하여 土地를 占有한 것을 指稱한 것이며 中世紀에 있어서 全歐羅巴에 걸쳐서 社會的 組織의 支配的 形態이었던 模樣이다. 마르크(Mark) 共同體의 數個의 村落共同體를 包含한 大共同體인 것이다. 이 게르만(German) 共同體는 發生이 그다지 오랜 것은 아니다.

마르크(Mark) 共同體의 特徵을 보면 家屋 및 宅地를 除外한 耕地를 共同體로 하여 各構成員은 一定期間에 그 利用權이 賦與되어 있었다. 一定期間의 經過後에는 抽籤에 依하여 利用權을 更新하였으므로 이 耕地를 抽籤地(Losgut)라 하였다. 그리고 森林, 草地, 放牧場, 河川 等은 共同體의 所有로 하였고 各構成員은 同等한 持分(Anteil)과 利用權을 保有하고 있었다.⁷⁾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共同體의 概念은 學者에 따라 觀點에 따라 相異하며 同系라 할지라도 아직 一致된 것이 없다. 要컨데 共同體는 物質的 基礎가 되는 것과 社會的 諸關係를 中心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共同體의 物質的 基礎는 資本制 生産에 先行한 諸社會 段階에 있어서 生産諸關係를 中心으로 하는 共同體이다. 이것은 資本主義 以前의 諸社會에 있어서 나타났던 「土地所有」(Grundeigentum)가 아직 生産의 主要條件으로 他의 動產所有에 비하여 壓倒的으로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와 같이 富의 包括的인 基盤이라 할 수 있는 物質만이 共同體로서 成立되는 基礎가 되는 것이다. 即 物質的 基礎인 土地는 「一定한 社會를 위하여 生産하고 있는 人類로 因하여 「占取」된 限에 있는 「大地」는 生産의 原始的인 客觀的條件으로서 大地의 一片에 不遇한 것이다. 「大地」는 人間에 있어 本原的으로 居住의 場所뿐만 아니라 食糧과 其他 既成의 生活手段을 貯藏하는 天與의 大倉庫로서 나타나며 人間은 勞動過程에 들어가는 生産活動의 前提로서 그것을 自然으로 부터 附與되는 것으로 占取하는 것이다. 大地의 이와 같은 根源的인 性質은 歷史를 거슬러 올라가 原始的인 所謂「採集經濟」의 時代에도 마찬가지다. 要컨데 歷史上 人間은 生産活動의 前提로서 이러한 大地의 諸斷片을 占取하고 이와 같이 占取된 大地가 다름이 아닌 「土地」인 것이다. 要컨데 共同體 成立의 物質的 基礎가 되는 것은 自然的 勞動客體인 大地에 附着하고 있기 때문에 人間自體도 大地에 密着하여 生産의 非有機的 條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活動的인 人間과 그 對象條件인 自然과의 原始的인 直接的 統一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土地」라고 하는 近代以前의 富의 基礎範疇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여기서는 分析의 焦點을 바꾸어서 그와 같은 「土地」의 占取를 物質的 土台로서 成立하는데서의 共同體라고 보는 社會關係에 關한 考察을 하고자 한다.

共同體라 부르는 社會關係는 그 成立에 있어서나 또는 存立의 根底에 있어서 이러한 「自然的」 勞動諸主體가 自身부터 가지게 하는 「原始的」인 事態와 本質的인 깊은 關聯을 가지

7) 前掲書 p. 47

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먼저 念頭에 두어야 한다.

共同体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이 生産되는 自然的 諸個人이 自然狀態로 부터 歷史 가운데 直接으로 나타난 原始的 集團性 乃至 血族組織 거기에는 原始的 群團(Horde Herdenwesen)부터 始作되어 어느 程度 複雜한 内部構成을 가진 「種族共同態」(Sammgemeinschaft)에 이르기 까지 一連의 發展이 있는 「原始共同態」(ursprüngliche Gemeinschaft)를 持續하고 있다. 即 그와 같은 「原始共同態」는 그것을 構成하는 諸個人에 「大地」의 諸斷片을 占取하면서 生産活動의 中心을 漸漸 農耕으로 옮기는데 따라 單純한 「原始共同態」로 부터 漸次的으로 農業共同体로 移行하여 가게 이르지만 이것은 「原始共同態」라고 하는 原型으로부터 移越된 諸特徵은 共同組織(Gemeinwesen)이고 이 共同組織을 根底에 가진 社會關係만이 共同体(Gemeinde)이다. 即 自然的 諸個人은 恒常 原始的인 共同態로 組織되어 있고, 따라서 諸個人은 그러한 共同組織의 一員으로서 「大地」를 占取하고 스스로의 勞動을 하여 關係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共同組織이 現實의 勞動過程 가운데서 各各 生産 諸力의 發達段階에 相應한 一定의 形態를 取하면서 共同体로서 스스로를 再生産(Reproduction)하여 가는 것이다.

現段階에서의 共同体는 農耕生産力의 一定度の 發達을 基盤으로 하여 一連의 段階의 發展을 遂行한 原始的 血緣의 共同組織이 農業共同体로 進展하므로 因하여 成立하였다고 볼 수 있다.

以上 술한 바는 現在에 있어 共同体의 第一次의 構成이라고 할만한 原始的인 農業共同体에 關한 것이나 歷史上 共同体의 存在形態는 비단 基本的인 農業共同体만에 대해서 一次的인 構成만이 아니다. 끝으로 社會的 諸條件을 自然的 諸條件과 對比하여 考察하여 보면 다만 社會的 諸條件中에서 共同体 成立 以前에도 우리 社會形態에 決定的 役割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共同体의 成員은 自然的 乃至 社會的 諸條件의 絕對的인 영향하에 이루어진 社會이다. 이러한 社會經濟的 諸現象이야 말로 自然的 諸條件에서 社會的 諸條件으로 이행하고 있는 過渡段階의 性格을 特徵的으로 內包하고 있는 어느 한 段階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⁸⁾

아무튼 以上에서 考察한 共同体가 今日의 經營共同体를 낳게 한 前提가 된다. 共同体에 基因하여 나타난 經營共同体는 이미 先進國에서 많은 研究가 行해지고 있으며 그 代表的 研究者는 獨逸의 닉리슈(Heinrich Nicklisch 1876~1946)인데 오늘날 經營共同体의 理念을 가장 明確히 表明하며 經營共同体 理論의 始祖者로서도 알려진 者이다.

이는 1912~1920년에 이르는 第一次大戰의 戰前 戰中 戰後를 通하여 獨逸内外의 歷史的 事實에 있어 檢證하고 確信을 가지고 人間共同生活에 關한 眞理의 媒介者가 되게끔 組織論

8) 經濟學研究 第15輯 1965, 12 參照

을 中心으로 經營共同體의 理念을 찾고 있다. 이러한 것은 利益의 共通性을 經濟의 全領域에 擴張하여 利益共同體의 理念으로한 生産共同化, 勞動共同體, 奉仕共同體, 運命共同體에 까지 變모하는 이데오로기(Ideology)를 만들고 있다. 卽 經營共同體는 소위 現代의 經營이라 할 수 있다.

닉리슈에 依한 經營共同體는 組織의 觀點에서 經營에 參加하는 사람들 사이에 成立하는 社會的 關聯 즉 經營社會的 構造關聯의 共同化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考察할 때 漁業經營共同體란 漁業을 中心으로 組織된 經營體로서 卽 漁業을 中心으로 하여 組織된 經營體에 있어서 그에 參加하는 사람들 사이에 成立하는 經營社會的 構成關聯의 共同化라고 할 수 있다. 이의 具體的인 組織體로서는 漁業企業體, 漁業協同 및 그의 自營業體와 漁村契 等 各種을 생각할 수 있으나 共同化의 本質에 立脚해서 볼 때 現實에 있어서 가장 代表的인 것은 漁業協同組合의 自營業體와 漁村契이나, 前者는 극히 少數에 限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漁村契를 中心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以上에서 나타난 理論을 中心으로 漁村契를 보면 世界史上에서 볼 수 있는 말크(Mark) 共同體의 特徵에서 나타난 바와 다를 바가 없으며, 또한 國史上에 나타나 民族共同體에 있어서 農土가 共同所有로 되어 共同生産을 行하였던 農村共同體가 있었던 바를 기억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世界史上에서나 國史上에서 나타난 이러한 共同體의 物質所有에 따라 共同生産을 中心으로 라는 經營方法을 發見할 수 있다.

이런것이 점차로 社會제도의 變화로 私有化 되었는데, 특히 韓國漁村에 있어서 地先의 共同漁場은 아직 共同體의 所有로 남아 있다.

이 漁村契는 地先共同漁場의 物的 所有와 밀접한 關係를 맺게됨에 따라 定住性을 띤 人的 構成이 共同體의 形式으로 形成되어 漁村共同體가 나타났다고 본다. 이에 生産方法은 今世紀에 있어서 企業經營에 나타난 現代經營方法의 하나인 經營共同體의 形式으로 漁村契가 經營되고 있는 것으로 論者는 보고 이에 나타난 諸現象을 本稿를 通하여 發表하고자 하는 바이다.

三. 漁村契의 發生

漁民의 生産增大와 生産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漁村契가 形成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漁村契의 誕生過程을 考察하고자 한다. 漁村契의 存立은 今日에 우리 水産業의 後進性을 탈피하고 있지 못한 것을 漁民의 協同組織을 促進하여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向上과 水産業의 生産力의 增強을 圖謀함으로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期하기 위하여 우선 待望의 制度改革의 必要性을 國家가 가져 1962年 1月 20日 法律 第1013號로 制定된 水産業協同組合法에서 漁村契의 必要性을 갖게된 것이 표시이다.

그러나 오늘날 漁村契라는 用語를 사용하게 되고 이의 必要性을 갖게 된 것은 論者가 보

는 見解로서는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부터 이에 關한 要因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觀點下에서 여기서 잠간 漁村契가 發生한 歷史的 發展過程을 考察하고자 한다. 近代의인 水産團體로서는 各種의 組合이나 協會를 들 수 있고,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는 各種의 契가 存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文獻上으로 나타난 것은 一般契의 研究者인 金三守, 金柄夏 教授는 韓國의 契는 大體로 高麗와 李朝時代에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에 따라 漁業에 있어서 契도 이때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大概 漁業에 關係되는 契로서는 漁夫契, 漁網契, 漁船契, 漁業契, 曹契, 船具契, 船材契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⁹⁾

또한 契가 漁村에 編成된 것은 契의 性格自体가 公益, 共濟, 生産補助, 營利, 社交 等を 目的으로 하는 것이 契이므로 이것이 여러 分野에 育成되게 되었다. 近代에 와서는 契를 通한 産業資本 形成과 調達は 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漁村狀態는 窮乏하므로 이의 打開策으로 漁村契를 組織하여 自力更生의 기틀을 만드는 의미에서 漁村契가 된 것이다. 實로 漁村契는 重大한 意味를 가지는 것이다.

이상에서 漁村契의 發生過程을 살펴 보았는데 나아가서는 漁村契는 어떻게 組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四. 漁村契의 組織

漁村契의 主体는 契를 組織하는 契員으로 構成된다. 法令에 依하면 漁村契는 「地區別 漁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은 公共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1個 또는 數個의 部落 또는 里, 洞을 業務區域으로 하는 漁村契를 組織할 수 있다」(水協法 第16條의 2)로서 構成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組合員資格은 「그 業務區域內에 住所나 居所 또는 主事業場을 가진 漁民으로서 一年을 通하여 定款으로 정하는 60日 이상 漁業을 經營하거나 이에 從事하는 者라야 한다.」¹⁰⁾

그러므로 以上과 같은 規定에 依한 漁民만이 漁村契의 契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이러한 「契員의 資格이 없는 漁民은 契員 過半數의 同意를 얻어 準契員이 될 수 있다.」¹¹⁾

다음으로 「漁村契의 業務區域은 自然部落 單位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그러나 共同 漁場의 分割이 不可能하거나 其他 不得已한 경우에는 隣接한 數個部落 또는 里, 洞을 區域으로 할 수 있다.」¹²⁾

9) 張設鎬著 水産業協同組合經營論 p. 1

10) 水協法 第26條 1回 第1項

11) 水協法 施行令 第9條

12) 水協法 施行令 第2條

以上과 같은 點을 綜合的으로 考察할 때 漁村契員의 資格을 地區別 漁業協同組合員에 制限하고 있으며 業務區域을 自然部落 範圍로 하는 小區域主義를 原則으로 하나 特別한 경우에는 그것을 擴大할 수 있게 하고 있다.

前者는 地緣性을 根據로 하여 社會經濟的 協同을 圖謀하는 同時에 漁民組織으로서의 純粹性을 가지는데 있으며 後者는 前者의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의 實現에 있어서 能率向上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目的達成을 爲한 手段으로서의 事業은 主로 生産經濟的인 것이며 그것이 共同漁業權으로서 具現되기 때문에 現實에 있어서 相互 利害的 關係에서 他部落과의 紛爭을 招來할 수 있으므로 이에 對한 解決과 또한 零細性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는 業務區域을 擴大할 수 있게 하고 있다.

五. 漁村契의 目的

漁村契는 漁協의 下部組織으로서 設立되어 契員의 生産增強과 生産向上을 圖謀하기 爲하여 即 契員의 生活安定과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向上을 圖謀하기 爲하여 共同事業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¹³⁾

即 漁村契는 漁村契員인 小生産者의 經濟的 弱者의 共同体이므로 漁村契員은 漁村契가 가지고 있는 生産設備, 共同財産, 信用資本 等を 直接 利用함으로써 欲望 또는 必要를 直接 充足시키는 漁村契員의 共同利益(Gesellschaft)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窮極的인 目的인 것이다.

漁村民은 沿岸漁業을 根據로 하고 있다. 即 沿岸漁業에 있어서의 主体는 漁民이며 이들의 協同組織으로서 漁村契가 形成된다. 村落을 中心으로 하여 漁民들의 共同體의인 漁場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 共同漁場이다. 이와 같은 共同漁場을 形成하고 있는 組織으로서 共同體의 成員間에는 平等原則에 立脚하고 있으므로 漁業生産의 諸條件은 均等化 되고 經濟的 利益은 平等하게 享受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漁村契는 共同體로서 即 部落單位나 隣接한 數個部落 또는 里, 洞을 區域으로 하여 構成되는 것이며 그것은 契員의 生活安定과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向上을 圖謀하기 爲하여 지금까지 個個의 生産單位에 있었던 小生産的 漁業經營이 協同下에 一個의 經營組織이 되어 漁業을 計劃的으로 行하고, 生産, 販賣, 購買, 信用事業을 一單位로 하여 行하는 것이다. 生産單位間의 競爭과 漁場使用의 無計劃性, 豊兇에 隨伴되는 經營相互間의 浮沈과 生活苦로 因하여 漁夫의 離村에 依한 沿岸漁業의 裏退 等を 漁村契로 하여금 小康狀態로 止揚하는 것이다. 따라서 漁村契라 함은 經營規模의 擴大를 招來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經營規模의 擴大라는 것이 漁村契의 한가지 焦點

13) 水協法 施行令 第9條

이 되는 것이다.

資本主義下에서 漁村契는 小商品 生産者로서 漁民의 再生産過程에 있어서의 共同行爲에 不適合한 것이다. 本來 漁村契가 問題로 되는 경우 當然히 다음과 같은 狀態를 規定하고 있다. 즉 資本主義의 確立後에 多數의 小漁業이 從來 成存된 그대로 商品經濟의 内部에 編成되어 漁民은 그 生活의 基礎를 商品經濟側面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狀態에 놓여있다. 이러한 點에서 漁村에서는 自力更生의 길을 摸索하는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漁村契에서는 漁業經營共同體의 組織이 資本主義의 發展段階에 있어서 無政府的 生産의 矛盾을 漁業生産의 再編成으로 誘導하고 그의 矛盾을 部分的으로 抑制함으로써 生産 및 市場에 一定한 組織과 安定性 等を 부여할 수 있다.

六. 漁村契의 事業

漁村契는 그의 目的達成을 爲한 手段으로서 各種의 事業을 營爲한다. 換言하면 漁村契는 共同事業을 目的으로 한다. 漁村契의 事業에 關해서 法律上 規定하고 있는 것을 보면(水協法 施行令 第15條 1項) 다음과 같다.

(1) 漁業權의 取得과 開發 및 所屬地區別 組合所有의 共同漁場 및 養殖漁場의 專用

漁村契의 目的에서 본 바와 같이 漁村契의 共同利益을 爲하여서는 共同事業을 含은 勿論이나 여기에는 漁業權의 共同을 基礎로 한다. 即 漁村契가 共同漁業權을 取得함으로써만이 漁村契員 各自는 共同漁場의 作業에 參加할 수 있고 여기에 共同體가 形成되는 것이다. 共同漁場의 取得은 零細化 되어 가는 漁村民의 生活安定과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向上을 圖謀하는데 있다.

即 從來 海面은 開放되어 누구든지 自由로히 漁業을 經營할 수 있었다. 그 理由는 古代에는 漁業을 經營하는 사람들은 社會가 賤視하고 따라서 漁業經營者가 少數여서 資源枯渴의 念慮가 없었기 때문에 海面은 開放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08년에 公布된 韓國漁業法에서 自然的으로 繁殖하며 採取하기가 손쉬운 海藻類를 地先에서 採取하는 者에게도 海藻採取漁業의 許可를 附與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海藻採取許可를 가진 者를 “養礁主 또는 養岩主”라 하였으며 또한 當時에는 許可를 가지지 않더라도 王의 命令에 의하여 一部 바위를 獨占하여 그 採取物의 一部를 宮中에 上納하여 왔던 경우도 있었다.

1911年 總督府令으로 漁業者의 共同團體인 漁業組合의 誕生을 보게 되고 이 漁業組合이 共同漁業權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專用漁場이라 한다.

이 專用漁場의 免許는 當該 漁業組合에 附與하고 그 行使權은 特定人에게 局限하지 않고 慣行者는 慣行에 따라 또는 當該 組合員은 組合員의 資格으로서 均等하고 共同으로 採取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이 發展되어 現行 水産業法에서 漁村契別로 行使區域을 定하여 契員이면 누구든지 共同漁場을 均等하게 共同行使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問題되는 것은 從前에는 自己 區域이 있던 것이 現수에 있어서는 他 區域으로 되므로 이에 따라 行使權의 範圍에 變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므로 漁村契 相互間에 있어서 紛爭事件이 惹起되고 있으며 法院의 判決을 要하고 있는 地域도 적지 않다.

(2) 漁民의 生活必需品와 漁船漁具의 共同購買

이것은 漁村契가 漁村契員들의 日常生活에 必要로 하는 生活必需品 및 漁船漁具를 共同으로 調達하고자 組織한 것으로서 이러한 事實은 漁村契員과 生産者나 都賣商과의 사이에 介在되고 있는 中間商人의 存在를 排除하므로 不當한 中間利潤을 止揚하고 이를 通하여 調達價格의 低下를 期하고자 하는 것이다.

(3) 漁村共同施設

漁民은 餘裕있는 資金을 갖지 못하므로 漁村契員 自身들의 經營活動에 所要되는 施設을 共同으로 調達 管理 利用하고자 하는 目的下에 組織된 것이다. 即 漁業經費의 輕減으로 漁村契의 復興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보통 압프장치, 揭示板, 氣象信號台, 성양기, 共同倉庫, 공동우물, 공동 염장장, 마을문고 또는 船浮場, 船着場, 船揚場, 漁附林 其他 必要한 漁村共同施設 等이다.

(4) 水産物의 共同製造 및 生産品의 共同販賣

水産物의 共同生産 또는 共同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것은 水産物의 蒐集販賣体制을 確立하여 流通過程 改善은 適正價格을 維持하고 生産意欲을 昂揚시킴과 同時에 製品의 品質改良으로 輸出振興을 招來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事業은 共同漁場의 效率의인 開發에 더욱 拍車를 加하는 것이 된다.

(5) 漁業資金의 斡旋 및 配定

漁村契는 金融上의 便益을 가지고 있지 않는 漁村契에 있어 또는 零細한 漁民層에 資金面의 惠澤을 附與한다. 原則적으로 資金의 融通에는 金融機關이 있으나 그의 利用에는 擔保物의 提供不能 또는 信用性의 稀薄과 같은 것으로 因하여 漁村契員과는 遊離된 것으로 存在한다. 여기에서 이들 弱少漁民들은 이러한 資金難을 克服하기 爲하여 漁業資金의 斡旋 및 配定을 公明正大하게 配定하는 組織을 가지고져 한다. 이러한 組織이 契의 信用事業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漁村契의 契員은 本來의 事業을 獨立的으로 維持하면서 이 本來의 維持 乃至 向上을 圖謀하기 爲하여 共同事業을 漁村契를 通하여 하는 것이다. 即 漁民은 契를 通하여 信用, 販賣, 購買, 生産 等に 諸般事業을 共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各契의 機能은 契員의 成分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모든 機能이 主로 經濟事業인 것이다.

契는 契員의 販賣, 信用, 生産利用 等の 經濟的 便益을 提供하기 爲하여 契員의 共同出資(現物, 勞動도 包含)에 依하여 事業體를 組織하여 運營한다. 漁村契가 行하는 經濟事業은 消費者 또는 小生産者가 從來 個別的으로 行하던 經濟事業 또는 行할 수 있는 行하여야 할 經濟事業을 消費者 또는 小生産者에 代身하여 行하는 것이며 漁村契의 事業方式은 合業(分業에 對한 合業)을 行하는 것이다.

漁村契는 이런 經濟事業을 行하기 爲하여 事業體를 組織運營하는 것이다. 漁村契는 이런 事業을 組織運營하여 契員에게 經濟的 便益을 提供한다. 漁村契員側으로 보면 漁村契는 共同으로 事業을 만들어 이것을 共同으로 運營하여 만들어 낸 便益을 利用하는 것이된다. 漁村契의 事業은 契員이 所有하고 이를 利用하는 것이며 所謂 所有와 利用이 一致된다. 따라서 漁村契의 事業은 收益運營이 아니고 實費經營이 되는 것이다.

漁村契의 事業에서는 所有와 利用이 一致되므로 契員은 自己의 事業과 去來하며 그 範圍內에서 商人等 外部 사람들과 賣買去來를 行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 範圍內에서 漁村契는 經營과 買主의 摩擦과 對立을 排除하게 한다.

資本主義에서의 賣買는 賣主와 買主와의 利害衝突이며 마치 一人의 利己主義者間에서 일어나는 決鬪와도 같은 것인데 漁村契에는 이런 關係가 없다. 消費者에서는 賣主와 買主의 相爭이 없고 信用에서는 貸借兩者間의 相爭이 없으며 生産에서도 契員 사이에는 相爭이 없다. 漁村契는 平和와 漁民의 幸福을 增進하는 것이다.

漁村契의 共同事業은 主로 漁村의 地先에 있는 共同漁場에 있어 生産을 主目的으로 한다. 그 理由는 이 共同漁場은 「土地」의 共同體의 所有의 形態와 같은 것이다. 即 「生産手段의 集團的 또는 共同的 所有에 集團의 生産과 이에 照應한 社會組織 및 이데올로기(Ideology)에 있는 것이다. 좀더 添言하면 諸生産手段의 共同體의 所有, 共同勞動에 依한 生産物의 共有 또는 平等한 分配, 따라서 私의 所有와 그 觀念이 없고 同時에 階級の 發生을 排祭하는 것이다」¹⁴⁾

共同體의 本質인 共同組織은 그 共同社會에 있어 人間이 形成한 端初的인 것이다. 이 共同組織을 形成하는데 있어서 血緣과 地緣을 基礎로 하여 社會關係의 基本이 共同體로서 構成되어 있는 限 自然的 諸個人은 一定한 共同組織으로 編制되어 그 一員으로서 自己의 勞動을 通하여 大地에 關聯하는 것이다.¹⁵⁾라고 하는 것과 같이 漁村契에서 漁場共同所有를 基礎로 삼고 有用的 諸活動은 相互間 獨立的으로 私事로 經營하는 것이 아니고 共同體의 編制하여 勞動의 自然的 形態가 勞動의 特殊性으로 된 形態이다.

14) 李英俠著 一般經濟史 要論 p.67

15) 崔文煥, 朴峻, 吳日孤, 禹基度, 共著 經濟史 p.37~38

歴史的으로는 物質的 基盤이 되는 勞動의 客體인 「土地」가 中心이 되어 生産을 하는데 있어 社會發展의 經濟的 構造가 變遷됨에 따라 形態는 多種多樣으로 變貌하였다.

그러나 土地所有의 基礎的인 共同體의 所有는 現金에 있어서는 거의 完全히 崩壞되고 없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共同漁場은 共同體의 所有의 特殊性을 가지고 있고, 이는 現在에 있어 法律上 保護를 받고 있다. 海藻類漁場은 가장 代表的인 것이며 全體의 基調는 漁場의 共有=共同所有이고 그것은 漁村의 共同體存立의 物質的 基盤이 되고 있다. 이것이 封建體制인가에 對해서는 再考할 問題이나 이 點은 共同體에 있어 漁業에 特殊한 生産條件에 依하여 土地보다 더욱 後에까지 그 矛盾을 破壞치 않고 原型은 存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漁業의 資本主義的 發展에 있어서 漁場의 秩序體制를 單純히 漁業權에만 止揚하지 않고 沿岸漁業一般에 까지 擴張하고 있다. 近海漁場에 對해서는 中央 및 地方의 許可制度로 하고 또한 沿岸地方 大規模定置漁場에 對해서도 私有化를 認定하고 있으나 其他 沿岸의 一般的 漁業에 對해서는 契員의 共有로서 即 共同體의 實權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다. 이러한 漁場所有는 漁村契에 依한 共同體의 漁業共有體制의 確立으로서 即 漁村共同體의 共同體의 漁場所有形態이다. 또한 漁村契는 共同漁場의 所有主體로서 漁場生産力의 發展에 寄與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漁協에 地先漁業權을 付與하고 있는 水産業法의 理念도 역시 如斯한 漁村의 共同體의 性格과 그 物質的 基盤인 漁場의 共同體의 所有를 肯定하고 있는데 根據를 두고 있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는 漁村契의 上部組織으로서 共同漁場의 所有主體로서 寄生地主化라는 事例도 있다.

七. 漁村契의 類型

漁村契의 類型은 觀點에 따라 多樣으로 分類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生産作業形態 如何에 依해서 分類하고자 한다. 그 理由는 漁村契의 組織은 法律上에 規定되고 있는 資格에 依해서 組織되고 있으므로 類型의 考察은 事業名에서 特徵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의 基底가 되는 漁業權은 大體로 漁協이 所有하고 있으며 그것을 漁協에서 賃借하고 있는 點에서 各 漁村契에서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또한 漁場監視上에 있어서도 大體로 共通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基底로 해서는 分類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生産作業形態에 따라서 漁村契의 類型을 分類해 보면 大體로 다음과 같다.

(一) 共同作業과 共同計算을 原則으로 하는 形態

이 形態는 漁場의 管理, 磯洗作業 및 作業構造 등을 비롯하여 採取作業까지 契員들이 直接 遂行하며 그 漁獲物의 管理, 販賣를 共同計算下에 두고 販賣하여 共同分配한다.

事 例

1. 公須漁村契

慶尙南道 東萊郡 機張面 公須里, 公須漁村契에서는 契員 100名으로 構成되고 地先의 和布共同漁場을 機張漁協으로 부터 賃借하여 契員이 共同管理 및 共同作業을 한다. 作業時는 共同漁業의 合理的 管理를 爲해서 漁村契總會에서 一等地, 二等地, 三等地域으로 區分하여 作業을 하게 한다. 作業地 配定方法은 埋籤(lot)式으로 하여 定하고 契員은 當籤區別로 各 各 組를 形成하여 共同作業을 한다. 作業에 參加하는 契員(組員)에 對해서 入漁料를 徵收한다. 入漁料는 作業等級에 關係없이 平等하다. 契員이 採取作業을 할 수 있는 水域에 있어서 潛水에 熟達된 地方海女와 外地海女(濟州海女)를 雇傭하여 採取作業을 行하는데 이 때의 賃金을 짓가림制를 採用하며 그 分配比率는 契員(組員)과 海女 사이에 總生産物을 3대1의 比率로 現物分配를 共同計算下에 두고 있다. 現物分配를 하는 理由는 採取物의 乾燥에 便宜하기 때문이다. 即 契員이 採取作業에는 潛水技術이 없어 參加하지 못하나 陸地에서 乾燥作業은 할 수 있으며 그것은 比較的 쉽고 便宜한 것이기 때문에 現物分配를 하는 것이다. 海女の 雇傭에 있어서는 可及的 地方海女 即 契員中에서 擇하는 경우가 많다.

海女는 契員으로서 配當區域에의 作業에 參加하는 以外에 有閑時를 利用하여 雇傭되는 것이므로 雇傭時에는 契員의 資格이 아니라 完全히 被傭者의 資格으로서 參加하는 것이다. 이러한 海女는 一般으로 契員中에서 生活이 窮乏한 者들이 많으며 採取技術로서 多少 所得을 增大하여 生活費에 充當한다.

2. 場基漁村契

慶尙南道 昌原郡 鎮東面 場基里에 設立한 石花養殖契라 稱하는 場基漁村契에 있어서는 契員 76名으로 構成되어 石花共同漁場을 經營하고 있다. 漁場造成에 있어서 業務는 契員의 共同作業에 依해서 遂行되었다. 即 業務는 大概 契員이 共同으로 平等하게 出役한다. 이 出役方法에 對해서는 場基漁村契 規約에 다음과 같은 規定을 定하고 있다. 出役은 100%를 基準으로 하고, 40% 以上 出役치 않을 때에는 契員으로 부터 除名으로 한다. 그러나 契員의 家庭에 吉兇事나 出産이 있을 때에는 此限에 不在하며, 勤務能力(15歲 以上)이 있으면서도 不出役時는 罰金으로서 徵收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大概가 共同作業에 參加하는 것이다.

販賣는 筆者가 調査時까지 아직 生産이 없어 販賣割當이 없었으나 앞으로 漁獲物은 水協에 限하여 販賣키로 한다고 契則에 明示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養殖漁業에서 얻은 利益金은 契員이 共同으로 貯蓄하여 두었다가 契自体에서 漁船을 建造하여 앞으로 漁撈에 많은 進出을 할려는 計劃을 세우고 있었다.

3. 하반 및 선창 漁村契

全羅南道 羅老島 漁協下의 하반 漁村契 및 선창漁村契에 있어서는 다 같이 養殖共同漁場을 經營하고 있다. 漁家別로 한 사람씩 採取作業에 參加하게 하고 生産物은 共同計劃下에 둔바 戶當 作業量이 個人別의 割當量(한통)에 未達하면 辨償措置시키고 割當量을 超過하면 個人所得으로써 가지게 한다. 이것은 作業能率을 올리기 爲한 制度인 것이다. 그리고 作業을 하기 爲하여 作業場(養殖場)에 들어 갈 때는 出席을 불러 作業에 參加시키고 作業이 끝나면 生産物을 蒐集員이 蒐集하여 全体로서 漁協에 委託販賣한다. 販賣代金은 總金額을 契自体에서 積立하여 두고 農事に 도움이 되는 肥料를 共同購入하여 平等原則에 依해 配分하든가 또는 養殖生産에 必要한 煮釜(굴 삼는 솥)을 購入하거나 其他 漁村共同施設로서 船着場 같은 契自体의 施設을 하는데 使用한다.

(二) 共同作業과 各自計算을 原則으로 하는 形態

이 形態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作業을 共同으로 하나 計算은 各自計算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事例는 다음과 같다.

1. 飛鶴漁村契

慶尙南道 東萊郡 西生面 新岩里 飛鶴漁村契는 契員 34名에 準契員 2名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各者 抽籤形式으로 作業地域을 配當받아서 共同作業에 參加하고 그 生産物은 各自의 計算으로 한다. 그러나 水深이 깊은 地域의 採取를 爲해 海女를 雇傭하는 경우는 公須漁村契의 方法과 恰似하나 이때의 人件費는 다음과 같은 率에 依한다. 給料支拂은 現物로 하여 海女 2쪽, 漁船 2쪽, 陸上事業者 手當으로 한다. 나머지는 契員 36名에 平等의 原則에 立脚하여 共同分配한다. 契員 1人當 平均 配當額은 約 1000원~4000원 程度이다. 海女, 船主, 陸地作業者는 모두 契員中에서 調達된 사람이므로 이들은 二重取得을 하는 結果이다.

2. 月内漁村契

慶尙南道 東萊郡 장안면 月内漁村契에서는 契員은 65名이며, 區域은 12區域으로 나누어진 區域마다 契員을 11名式 抽籤形式으로 作業區域을 配定하여 共同作業에 參加케 하고 그 生産物은 各自 計算으로 한다. 그러나 水深이 깊은 地域은 採取作業이 困難하므로 海女를 雇傭하는데 이의 成果分配率은 契員(組)과 海女사이에 3대1의 比率로 現物分配한다.

3. 鶴里漁村契

慶尙南道 東萊區 日光面 鶴里漁村契에서는 漁具는 各自가 持參하고 作業은 자기가 配定 받는 區域에서 行하고, 漁獲物은 自家計算으로 取하고 있다. 作業은 1日에 3回 乃至 4回로 制限하고 있다. 1回에 所要되는 時間은 40分間으로 定하고 그것을 漁村契長이 붉은 旗를 들고 호루라기로 信號를 함으로써 統制하고 있다. 契員 1人當의 所得은 1番草, 2番草, 3番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어서 約 1番草에는 3천원, 2番草에는 2천원, 3番草에는 1천원

이다.

(三) 被傭者에 의한 作業과 共同計算을 原則으로 하는 形態

이 形態에서는 和布, 天草 等 成長期間의 管理는 共同으로 行하고, 漁獲對象物의 實際 採取作業은 海女 또는 潜水夫를 雇傭하여 遂行하고 그의 生産物은 契에서 共同管理한다.

1. 新岩漁村契

慶尙南道 東萊郡 機張面 新岩部落을 區域으로 하고 있으며, 契員은 65名으로서 磯洗作業 및 漁場監視 等은 共同으로 하나 採取作業은 海女를 雇傭하여 行한다. 作業區域은 5區로 나누어 契員들은 區域別로 配置시키는데 이 方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抽籤形式으로 한다. 甲地域에서는 30名, 乙地域에는 20名, 丙地域에는 15名을 各各 配定하는데 各各의 區域配當者는 契員中에서고 實際 作業은 海女를 雇傭하여 行한다. 漁獲의 成果는 技術者로서 作業에 參加시킨 契員과 사공과의 사이에 6대1의 比率로 分配하고 契員과 설낫과의 사이에는 3대1로 分配한다. 그 나머지는 當該 區域契員 全員이 共同分配한다.

2. 新里漁村契

慶尙南道 東萊郡 西生面 新里 漁村契員은 62名으로 採取作業은 海女를 雇傭하여 行한다. 作業에 있어서 區域은 5區(코)로 나누어서 採取케 하며 한 區域에 설낫 2名과 사공1名의 契員들을 參加시키고 漁獲物은 當該 區域單位로 契員間에 共同分配를 하는 1人當의 所得은 5,000원~6,000원이다.

3. 구조나 漁村契

慶尙南道 巨濟郡 一運面 구조나 漁村契에 屬하는 知心島는 漁場의 條件으로 보아서 漁村 契員들이 直接 深海에서 作業하는 것이 不可能하므로 他地 海女들을 불러 作業을 依賴한다. 契員은 15名으로 構成되며 作業은 甲과 乙의 두 組로 나누고 各組의 構成員中에는 國民學校를 1名分으로 各各 加入시키고 있다. 이 理由는 知心島의 國民學校의 運營經費를 契員들이 共同으로 補助하기 爲해서이다.

作業은 島海女 3名과 他海女(濟州島 出身) 3名을 雇傭하여 行하는데 分配는 漁獲高가 100%에서 海女 50%, 島代表者에게 10%, 나머지 40%는 契員이 分配한다. 그리고 島代表는 또한 別途로 海女로 부터 10%를 더 얻어 合計 20%를 取得한다. 磯洗作業역시 他人 勞動을 利用하는데 1人當 日給 賃을 支拂한다.

各組는 1年을 週期로 하여 作業을 順番으로 行한다. 即 한 해에 甲組가 採取作業을 擔當 하였으며 그 이듬해는 休漁하고 作業에 參加하지 않으면 反對로 前年에 休漁한 그 組가 作業을 行한다. 作業하는 組는 休漁期에 1年間에 各 契員當 쌀 한 가마씩을 주기로 하고 있다. 作業은 組員中 代表者 1名이 作業管理함으로써 海女の 作業을 監督하고 또한 漁獲物가

지도 또한 總括하여 販賣하며 그 代金마저 分配한다.

(四) 獨立的인 生産業體를 構成하고 있는 形態

이 形態는 이제까지 考案한 것과는 달리 對象이 두 漁撈를 中心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야 말로 論者가 시도한 바 있는 漁業經營共同體의 代表的 形態로 생각한다. 이것은 城外漁村契에 나타난 것을 中心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城外漁村契는 慶南 蔚山市 城外部落을 區域으로 하고 契員은 45名으로 構成되고 있으며 定置漁業權을 共有하고 있다. 共有漁業의 運營은 契自体와는 別途로 獨自運營體로서 城興水產合資會社를 組織하여 行하고 있다.

城興水產合資會社의 組織은 契員 45名에 共同으로 漁業權取得時는 1人當 約 7,000원과 運營資金 必要時는 約 6,000원씩을 出資하고 있으며 機關에는 代表社員(代表理事) 1人, 監事 2人, 總務 1人을 두고 있다. 代表社員은 會社業務 一切을 統轄하며(規程 第1條) 監事는 會社의 業務를 隨時로 監事할 수 있으며(同 第3條) 代表社員 有故時에는(監事 2人이 合議) 代表社員을 代理하여 現金出納을 管掌한다. (同 第2條) 그리고 總務는 代表社員을 補佐하여 會社의 業務를 掌握하며 代表社員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同 第1條)

契員은 漁業勞務에 參加할 수 있으나 이때 會社와의 關係는 完全히 被傭關係에 있는 것이며, 株主로서 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同 第3條)

또한 契員中에서 會社의 漁獲物을 販賣하는 경우에도 一般 商人과 同等하게 取扱하게 되어 있다.

經營의 成果인 利益金은 1年(後期)에 한 번씩 平等分配한다. 即 勞務者와 城外漁村契의 分配比率는 3대7의 비이고 7에서 城外漁村契 運營資金을 控除한 나머지를 契員 45名이 分配하여 가진다.

論者는 앞으로 韓國沿岸에 있는 定置漁業을 經營共同體의 形態로 運營하게 하는 것이 연안 어업을 발전시키는 捷徑인 것으로 알고 있다.

以上에서 漁村契의 類型을 分類해 보았으나 그것은 同一 漁村契에 있어서도 漁獲對象物에 따라서 生産作業形態가 變更된다. 即 海藻類를 對象으로 하는 共同漁場에 있어서도 和布, 天草에 따라 그 作業形態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것은 一般的인 現象이다. 그리고 漁獲物의 計算은 上述한 自家計算 또는 共同計算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漁協 또는 漁村契에서 蒐集하여 一括 販賣하고 있다. 即 天草는 主로 漁村契에서 蒐集하여 漁協에 委託販賣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自己計算, 共同計算이라고 하는 것은 基底가 되는 것 뿐이며 市場流通에 있어서는 共同委託販賣의 形態라고 할 수 있다. 이에 對해서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生産物은 自己計算下에 두는 경우에 있어서도 共同蒐集에 依하는 것이 有利하기 때

분이다. 即 漁獲物은 大体로 各自가 漁獲한 量을 自己計算下에서 製品化하여 그것을 漁協에서 集荷하여 漁協이 商人과 入札賣買의 形式으로 公賣한다. 그 賣上額은 一定한 手數料를 控除하고 當日 各人에 支給된다. 특히 天草는 外貨獲得에 寄與하는 輸出對象品이므로 契員은 採取한 天草를 漁協을 通하여 一括的으로 委託販賣하게 되어 있으며 密賣하지 못하도록 取締對象이 되고 있다. 即 漁協에서 強制的 集荷買上의 方法을 擇하고 있다. 密賣한 者에 對한 罰則은 嚴重하다. 이 集荷된 物件에 對해 漁協 優先 買上의 形式에 依하고 있으나 그 賣上價格은 採取料로서 即 前渡金으로서 支給되는 것이다. 契員은 生産手段을 各自 所有하여 協同作業으로 生産한 漁獲物을 自己計算에 두는 경우에 있었어도 그의 製品의 販賣는 漁協에 委販하게 되어 있다.¹⁶⁾

八. 結 論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漁村契는 分明히 하나의 經營共同体이다.

漁村契는 物的 基礎가 되는 共同漁場의 集團의 所有를 基底로 하여 共同磯洗作業, 共同生産, 共同販賣 即 集團的으로 經營行爲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共同体性은 從來 典型的인 經營共同体였던 農業經營共同体에 있어서 農地 또는 地代 等이 모두 오늘날에 있어서는 個人의 私有化로 變遷하게 되어 農業經營共同体 自體의 崩壞를 招來한지 이미 오래나 沿岸의 共同漁場은 아직까지 個人所有가 아니고 漁村의 共同體의 所有로서 모두 經營을 行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經營合理化를 期하기 爲하여 마치 獨逸의 經營協議會法에서 보는 것과 같은 點이 現水協法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論者는 본다.

即 漁村契員으로 하여금 共同漁場의 經營參加에 임할 수 있는 法的 規定이 있으므로 漁業經營共同体가 存立하고 있다. 法律上의 規定은 現實의 要求에 依存하는 것이며 社會의 背景 即 必要性이나 重要性을 無視하고는 存立할 수 없는 것이다. 即 이러한 것은 簡單히 述하면 零細漁民의 生活安定과 經濟的 社會的 地位를 向上시키기 위한 目的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獨逸의 經營協議會法에 依한 經營共同体와 水協法에 依한 經營共同体와는 差異點이 있다.

即 前者는 被使用者로 하여금 經營에 參加시키는 것이고, 後者에 있어서는 被使用者로서가 아니라 그 契의 構成員인 漁村契員으로 하여금 共同으로 共同漁場의 經營에 參加할 수 있게 한 點이 다르다. 그러나 法律上 制定의 窮極的인 目的은 經濟的 弱者를 共同事業에 參加할 수 있게 하여 共同利益으로서 漁村契員의 所得을 增加시키고 따라서 經濟的 弱者를 도우고져 한 趣旨에는 兩者가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16) 本人 現地답사

漁村契가 物的手段의 共有와 勞動力의 共同負擔이라는 點에서 典型的인 共同体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地域的 事業的 兩面性을 가지는 共同体에 있어서 오늘날 高度의 發展 形態인 規範으로서(水協法) 漁村契의 共同體의 存立을 뒷받침 하고 있다는 點은 現今에 있어서 經營共同體에 있어서만이 가지는 特異한 現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點에 對해서 本稿에서는 充分히 다루지 못했으므로 今後의 研究로서 더욱 究明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부산공전 조교수)